

담양군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

「담양군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. 1. 27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

2. 제안 이유

- 담양군 고령인구 증가 및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발맞춰 그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, 존엄하게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문화 조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 내용

가.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규정(안 제1조)

나.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에 관한 용어의 정의, 자치단체장의 책무,
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 등(안 제2조~안 제5조)

다.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노력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안
제7조)

4. 입법 예고 기간 : 2026. 1. 27. ~ 2. 1.(5일간)

5. 의견 제출

○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일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
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–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
–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 제출 서식

의견서

1. 조례안 담양군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

관련조문

의견

2. 의견

3. 기 타
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의견 제출인 주 소

(전화 :)

성명 (서명 또는 인)

담양군의회 의장 귀하

담양군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”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.
2. “사전연명의료의향서”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.
3. “인생노트”란 자신의 가족관계, 병력, 장례절차, 재산관계, 남은 생애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담양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업추진 등) 군수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.

1.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 지원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
2.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 관련 교육·홍보 프로그램 운영

3.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
4. 인생노트 작성 등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확산 사업
5. 그 밖에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교육 및 홍보) ① 군수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등을 제작·배부할 수 있다.

제6조(협력체계의 구축) 군수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을 위한 관련기관·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비밀의 유지) 이 조례에 따른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